

KiC

ISSUE PAPER

제44호(2017-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윤 해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 민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요약 • 3

II. 정책방안 • 5

III. 내용 • 7

1. 경찰 공무집행방해의 현황과 실태 • 7
2. 비교법적 고찰 • 9
3. 형사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 11

KiC

ISSUE PAPER

제44호(2017-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요약 • 3

II. 정책방안 • 5

III. 내용 • 7

1. 경찰 공무집행방해의 현황과 실태 • 7
2. 비교법적 고찰 • 9
3. 형사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 11

I. 요약 • • •

1 배경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인하여 또 다른 혼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 최근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점점 더 대담해 졌으며, 그 행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주취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오히려 단속하는 경찰에게 모욕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기도 함. 또한 파출소에 와서도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일반인의 도와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권과 기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권한 약화와 이를 부추기는 여론의 힘,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음.
-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인권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새로운 천적으로 부상됨.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등의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 없이 단지 온정적 관점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

2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점 도출

-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실제 활용사례와 정책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이를 위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심층 면담과 분석을 토대로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함.
- 공무집행방해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식통계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함.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심의결과 자료를 분석,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특성을 도출함.

-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 및 처리절차,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심층면담을 진행함.

3 개선방안

-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비교법과 판례를 검토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있어서의 행위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의 개선방안을 고찰함.
-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법교란사범의 법제도와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논의한 조사연구와 외국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판례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법적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경찰관과 시민이 Win-Win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보장방안을 제시함.

Ⅱ. 정책방안 ● ● ●

1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식통계 보완

- 공식통계는 해당 범죄의 발생 추이를 개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 유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가 매년 몇 건 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얼마나 발생하는 것인지 등을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임.
- 국제적으로도 경찰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도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공식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일본의 경우에도 공식통계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인지건수를 제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절대 다수가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2010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 및 피해 경찰관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음.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발생 상황을 세분화한 통계를 구축한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경찰관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경찰관 “안전인식교육(OSAT: Officer Safety Awareness Training)” 시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주폭’행위자의 엄정한 집행

- ‘주폭’과 관련하여 심층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형법상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됨에도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경하거나 입건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음주를 하고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요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 최근 음주 운전단속 강화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우리 사회의 추세를 감안할 때 주폭에 대한 온정적 대응기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술을 먹은 행위가 형법상 책임단계에서 논할 것이라면 상습적인 주폭 행위자 내지는 상습적인 '주취'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엄정한 공권력 확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즉결심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벌금 30만원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범죄의 '주취소란죄'는 오히려 최고 6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엄정한 집행차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

- 경찰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정말 몰라서 하는 단순 폭행사범에게는 구금이나 벌금형 대신 사회내처우로서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훈육과 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영국과 같이 양형을 차등화 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단순폭력의 경우와 같이 보아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조치로 판단됨.

Ⅲ. 내용 ● ● ●

1. 경찰 공무집행방해의 현황과 실태

가. 공식통계상 공무집행방해 발생 추이

- 1) 최근 10년간 연평균 14,150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 한 시간마다 2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1964년 인구 100,000명당 6건이던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2014년에는 인구 100,000명당 30건으로 5배가량 증가함
 - 공무집행방해는 198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 그 발생이 점차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즉,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는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21%에서 2014년 78%로 지난 20년간 4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함. 2014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주취 상태로 나타나,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를 초래하는 주취자의 폭력 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주취자 보호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에 처해 있음을 시사함
- 2)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1992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는 절반을 약간 넘는 58%였으나, 2007년 전과자의 비중은 80%를 초과함. 이후 최근 10년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로 나타남
 - 주취 상태의 전과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속기소 등 처분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에 대한 구속율은 꾸준히 감소, 최근 10년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중 연평균 8%만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됨. 한편,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하도록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 2014년을 기점으로 구속율이

전년 대비 2배인 10%로 반등함

- 3)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 유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공식통계를 추출, 분석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음. 독일의 경우 경찰관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한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 및 피해 경찰관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임.

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공상 경찰관 현황 분석

- 1) 2010년~201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심의결과 원자료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공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총 3,240건으로, 연평균 540건임.
 - 공상이 승인된 경찰관은 주로 30~40대로, 근무 경력이 5~10년가량 되는 남성 경찰관들의 비중이 높음. “젊은 현직”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상 피해는 경찰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상 경찰관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 등 생활안전 부서에 근무(86%)하고 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어 생활안전 부서근무 기피나 소극적인 112 신고 처리 등이 우려되는 면이 있음
- 2) 전체 공무집행방해 피해가 공상으로 인정된 전체 분석 사례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수가 50% 이상을 차지, 수도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발생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한편 수도권 내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무집행방해는 다수의 가담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단독 개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공무집행방해는 주말(토·일)에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30%), 늦은 저녁 및 새벽시간대(22~2시)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공무집행방해 행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주취 상태에서 음식점·주점 등 영업장에서 행패소란·시비 내지 무전취식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같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은 112 신고가 많은 주말의 야간 상황이라 조력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2인1조가 주취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에 대응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나타나기 쉽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상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됨

2. 비교법적 고찰

가. 독일

1) 무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망 또는 중상해를 야기할 정도의 위협을 가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와 상관없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경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모욕 등의 범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노조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음.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13조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보호법적으로 ‘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음.

2)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있어서 방해자를 별도의 방실에 구금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 안치시킬 수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 제164조에는 방해자체포제도라는 표제 하에 “직무활동을 지휘하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신의 관할 내에서 발하여진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체포할 수 있고, 그 익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공무집행 종료 시까지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때에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하여 체포가 가능함. “현행 범죄에 관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추적되고 있는 자가 도주의 혐의가 있거나 자신의 신원을 즉시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관의 명령 없이도 누구나 그를 잠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미국

1) 미국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 미연방법 18 U.S.C(the United States Code) § 1503(2014)에서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협박 또는 지장을 주고자 기도하거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협박, 유형력의 행사 또는 협박 편지나 통신으로 적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 또는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 또는 지장을 주려고 기도하는 자는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관이 법집행을 할 경우에 있어서 물리적인 행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상해와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단순히 행위자가 명령에 불응하고 허락 없이 차에서 내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빼지 않는 행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듯 한 행위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음.

2) 직무를 수행중인 미국 연방공무원 또는 정부기관의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제복을 입는 종사자 포함)에 대한 엄격 대응

- 경찰을 비롯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에 대하여 연방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영국

1) 양형 지침 개정.

- 양형 기준을 단순폭행,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폭행의 고의 여부와, 상해 정도로 세분화하여 제시함.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같은 경우 바로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폭행죄의 양형은 기본적으로 12주이며 이후 가중 또는 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의 범위를 행위유형에 따라 최대 26주의 구금 또는 사회내처우 상-하, 벌금형 등으로 감형 또는 가중처벌함.

2) 체포 저항 폭력 규제

- 영국은 대인공격법(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제38조에서 체포 저항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중범죄 또는 경찰관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에 저항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자는 경범죄에 처하고 법원 재량권에 따라 유죄가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형사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가. 법정형의 체계상 지위

1) 형법 법정형 체계상의 공무집행방해죄

- 우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범죄 억제력 차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상해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흡수되어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과실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있는데, 죄수는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임. 따라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법정형의 체계와 판례로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경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소방기본법과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체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호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호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경찰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법정형의 체계적 지위는 징역형의 경우 소방기본법과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벌금형의 경우 소방기본법은 3천만원 이하, 형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과 형법상 경찰을 폭행한 경우를 동일시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사점을 반영한다면 체계 정합성상 벌금형을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3)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검토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범위는 6월에서 1년 4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8월에서 1년 6월과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기본 형량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국가 공권력에 상징인 경찰을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점에서 양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범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가능함.
-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사뭇 다른 것을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음.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단하여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집행유예 기준상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유예의 영역을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형사정책적 방안 제시

1) 일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와 교육

- 경찰력의 낭비를 바로 잡고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을 위해서 일반국민에게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얼마나 나쁜 범죄이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음.
-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필요한 만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경찰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일반 국민들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보고 이로 인하여 중대범죄에 경찰이 투입되는 노력이 반감되고 사회를 유지하는데 경찰력의 한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경찰관의 교육

- 경찰관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원인행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경찰이 공무집행행위를 매개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침입한다면 오히려 원인행위의 빌미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야기할 수도 있음.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여부, 범죄의 경중, 피해정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찰관의 경우, 공정하고 적법한 공무 집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원인행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아울러 경찰 직장 내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직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경찰의 경우는 조직 내에서 조롱이나 비웃음을 받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

-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유형의 사람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며, 판례검토를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술에 취해서’ 또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어서’, 그리고 ‘형법상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등과 같은 양형이유를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대개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기껏해야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임.
- 영국의 경우 단순 폭행사범에게는 과거 구금 대신 사회내처우가 선고하는데, 경찰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정말 몰라서 하는 단순 폭행사범에게는 구금이나 벌금형 대신 사회내처우로서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단순 사회봉사명령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훈육과 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정책적 방안 도출

1) 경찰관의 대응능력 제고

- 불심검문, 임의동행 등의 법집행 절차에서의 침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현장대응능력 제고일 것이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경찰관의 불심검문 또는 현행법 체포 등이 형사소송법에서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불심검문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현행법 체포의 경우는 체포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한 신체제한이 되며,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 제고일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형집행장 집행 대상자, 임의동행 대상자 등에 대해서 각 행위의 한계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취폭력의 엄격한 대응

- 입으로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경하거나 입건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술을 먹고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 최근

음주운전단속 강화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우리 사회의 추세를 감안할 때 주폭에 대한 온정적 대응기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 상습적인 주폭행위자 내지는 상습적인 ‘주취’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함.

-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사람의 경우는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현행법 체포가 가능함. 그러나 형법상 폭행, 협박, 위계의 경우가 아닌 것으로 제한하여 현행법으로 경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점임. 더욱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벌금 30만원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범죄의 ‘주취소란죄’는 오히려 최고 6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엄정한 집행차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식통계 보완

- 공식통계는 해당 범죄의 발생 추이를 개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 유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가 매년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얼마나 발생하는 것인지 등을 논할 수조차 없는 실정임.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식통계상에 공무원 유형별 분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KIC ISSUE PAPER · 제44호(2017-12)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발행인 | 김진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02-575-5282 FAX.02-571-7488 www.kic.re.kr

발행일 | 2017. 10. 31.

* 본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iC

ISSUE PAP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EL.02-575-5282 FAX.02-571-7488 www.kic.re.kr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